

건설업관련 예산회계 주요법령

- 재정경제원은 '93년 12월 31일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공사계약의
- 하자담보책임존속기간을 종전 5년이내에서 민법규정을 준용하여 최장 10년까지
- 정할수 있도록 조정하고, 전문 감리회사가 공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
- 공사근거를 명시하는 내용들을 골자로한 예산회계법을 개정 시행했다.
- 이어, '93년 12월 31일 및 '94년 1월 8일자로 입법예고했던 예산회계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 14295호, '94. 6. 30)과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특
- 례규정(대통령령 제 14288호, '94. 6. 25)을 각각 공포·시행하였으며, 하위 규
- 정인 계약사무처리규칙(재무부령 제 1995호) 및 관련회계예규를 '94년 7월 20일
- 자로 개정·시행하였는데, 개정내용 중 건설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
- 로 간략하게 설명한다.
- '95년 1월 5일 제정·공포된 ('95. 7. 5. 부터 시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도 참고로 설명한다.

卓 永 淑

(大韓建設協會 契約制度課長)

1. 예산회계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공사의 분할계약금지제도 개선 (제70조)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시기적으로 또는 공사량으로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는 원칙규정은 그대로 존치하되,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일괄계약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는 분할발주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함.

종전에 동일구조물공사(기

능이 상호연결된 일체식 구조물을 건설하는 공사) 및 단일공사(예산상 단일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을 확정해야 하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예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에서 분할계약이 가능한 경우로 ① 기본계획서나 설계서등에 의하여 공구별로 분할계획된 공사

로서 이행기간, 성질,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일괄발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도로, 하천, 지하철공사 등 10개 공종공사 ② 건설업법상 특수공사중 조경공사 ③ 다른 법률에 의해 분리발주토록 규정되어 있는 전기공사 등을 열거하고 있었던 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분할금지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분할발주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에 단서로 격상시켜 ①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② 공사의 규모등에 비추어 공구별로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③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 한정함.

이번 개정이유는 예외적으로 분할발주를 허용하는 경우 공구별로 분할발주함에 있어, 공사의 종류를 회계예규로 일일이 열거하던 종전의 방식은 분할계약해야 할 모든 공사를 입법기술상 적절하게 규정하지 못함으로써 집행상 문제점이 노출되어 수시로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발주관서가 판단하여 신속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임. 또한 공구별로

분할계약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동일구조물공사나 단일공사에 있어 시공시나 시공장소가 서로 달라 분할계약하더라도 양 공사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지 아니함으로써 하자책임구분 곤란이나 공정관리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까지도 분할계약을 금지하는 불합리가 있었던 바, 이번 개정시 이와같이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는 발주관서가 판단하여 분할계약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이에따라 분할발주를 할 수 있는 공사를 예시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① 교실신축공사와 동시에 시공되는 방음벽 설치공사 (공간적으로 중복되지 아니함) ② 아파트 신축후 소방설비공사 (시간적으로 중복되지 아니함)

(2)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근거신설 (제74조, 부칙 제2조)

공동계약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 건설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활성화조항이 신설됨. 다

만, 동 내용은 정부조달시장 개방과 관련 '96.12.31.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됨.

공동도급은 도급한도액·실적·면허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어려운 업체들이 2인 이상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주기회의 확대와 위협의 분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간의 공동도급으로 기술이전 및 기술교류 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인바,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지역중소건설업체에게 수주기회와 기술이전기회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지방중소건설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제도개선취지임. 다만, 당해 지역내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10인미만인 경우에는 공동도급수급체구성상 문제가 있고, 경쟁의 실효성확보가 곤란하므로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조건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단서를 둠.

동 규정의 신설에 따라 앞으로 공동도급공사의 입찰공고시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을 명시하는 이외에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조건으로 발주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지역소재업체를 1인이상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참여)을 함께 표시해야 함.

(3)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 경쟁입찰실시근거 마련 (제90조 제1항 제8호 신설)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한사항을 추가신설함.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동일공사실적, 도급한도액 또는 기술보유상황등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에 추가하여 재무상태로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동 제한사항을 신설한 것은 부도발생등으로 재무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있는 업체와 같은 시공능력부적격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사전에 배제하여 동 업체가 낙찰받아 시공할 때 발생하게 될 수 있는 시공중지나 부실시공을 미리 방지하자는 데 그 뜻이 있음.

참고로 종전에도 경영상태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그 적용에 있어 획일적으로 부채비율이 일정비율이 넘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함에 따라 시공능력부적격업체가 아닌자가 입찰참가에서 배제되는 등 부적합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87.4.1. 개정시 삭



제된 바 있었음. 따라서 동 제한사항은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등으로 영업활동이 곤란한 업체에 한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시행상 문제점이 없게 회계예규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에서 규정하였음.

(4) 선금 및 대가지급 기한

의 단축 (제56조 제2항, 제117조)

선금지급기한은 종전에 계약체결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지급토록 한 것을 14일이내에 지급토록 그 기한을 6일 단축함.

또한 공사준공금은 종전에 검사완료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지급토록 한 것을 14일이내에 지급토록 하였으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특약기간도 역시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단축함. 그리고 기성대가지급 기한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내에서 7일이내로 개선함. 이는 종전의 대금지급기한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어,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필요한 행정소요기일을 감안 최대한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계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임.

(5) 전문기관의 감독 및 검사직무의 겸직대상공사 명시 (제114조 제6항, 제116조 제4호 신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과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발주관서공무원이 감독을 할 수 없는 제조, 기타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이는 부실공사방지대책 일환으로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령(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0조)에 계약총공사비가 50억 원이상인 토목공사, 계약총공사비가 50억원이상이거나 건축물바닥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감리와 감독을 겸하는 책임감리제도가 의무화되

있는 바, 예산회계법개정(제80조 제1항 단서 신설)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위탁이 있을 경우 전문감리회사가 발주자로서의 감독권을 대행할 수 있는 대상공사를 명시한 것임.

(6) 예산이월 가능공사 확대 (제19조 제1항 신설)

입찰공고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대입찰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대상공사, 대안입찰 및 설계 시공일괄입찰공사는 당해회계년도내에 입찰공고를 하였으면 지출원인행위인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 다음해로 이월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

이와 같이 입찰공고를 한 후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였다더라도 예산의 이월집행이 가능토록 한 이유는 회계년도의 세출예산은 이월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PQ제도와 같은 공사등의 경우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의 기간이 일반입찰공사의 경우보다 길어지게 됨에 따라 발주기관으로서는 예산집행상 많은 애로가 있어 세출예산의 불용처리를 피하고자 연도말에 무리하게 집행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기하기 위한 것임.

2.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 주요 개정내용

(1)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선정방법 개선

종전에는 기본설계입찰자 모두에 대하여 각자의 총공사입찰금액을 자신의 설계점수로 나누어 그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함에 따라 설계점수가 낮아도 총공사입찰금액이 작으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될 수 있었음. 이번 개정에서는 설계점수가 높은순으로 4명을 우선 선정하여 각자의 총공사입찰금액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그 수치가 가장 낮은 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함으로써 건설업체의 기술개발을 유도함.

또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심의위원회 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하던 심의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낙찰자 결정절차도 간소화함.

(2) 대안입찰 또는 설계 시 공일괄입찰대상공사의 공고절차 개선

재무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를 제출받아 건설부장관(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도초에 공고하던 것을 건설부장관이 직접 제출받아 심의.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그 절차를 간소화함.

3. 계약사무처리규칙 주요 개정내용

(1) 원가계산에 있어서 단위당가격 기준범위 확대

원가계산에 있어서의 단위당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건설공사의 경우 : 대한건설협회)이 조사. 공표한 가격에 의하되, 재무부장관이 단위당가격(정부노임단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도록 함.

이제까지 정부가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할 단위당 가격으로 정부노임단가를 매년 고시하여왔으나, 그 고시단가가 실제 시중노임단가와 격차가 커 부실시공의 한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시중노임단

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또한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시기,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납품지 또는 공사현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 가격의 15%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이에따라 최소한 현 시중노임의 85%수준이상은 적용받게되어 현재 정부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의 80%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노임단가 인상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며, 장기적으로 공사예정가격 현실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2) 하자담보책임기간 변경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종전 최장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정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 및 동법시행령의 근거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계약사무처리규칙에서 공사종류별로 1~5년으로 정하였던 것을 공사종류별 부위별 내용별로 1~10년으로 정함(별표 1 참조)

(3)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규정 신설

여러가지 공종이 복합된 공사(예: 도로공사 (2년)와 교량공사(최장10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한 경우 그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긴 종류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 전체를 반환하지 않게 될 경우 계약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즉, 위의 예시와 같이 도로공사부분에 대하여 2년이 지나면 당해 공종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임.

4. 회계예규 주요개정내용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

①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조정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중 심사분야별 배점한도가 종전에는 시공경험 40점, 기술능력 40점, 경영상태 20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시공경험은 30점으로 하향조정하고,

경영상태는 30점으로 상향조정함. (기술능력 40점은 불변) 이렇게 조정된 이유는 시공경험의 비중을 다소 낮추고 경영상태 비중을 높여 중소건설업체들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참가가 비교적 용이하도록 완화한 것임.

이와함께 각 발주기관이 공사의 성질 내용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 10%이내에서 20%이내로 상향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함.

② 시공중인 실적인정

종전에는 공사실적은 모두 준공실적만을 인정하여 왔으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대상 공종공사에 시공경험을 가진 업체가 제한되어 있어 현재 시공중인 공사도 시공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동종공사로서 당해 전체 공사의 예정공종표상 5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필한 후 발주관서의 장으로부터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부분에 한해서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도록 함.

③ 신인도 세부심사항목의 추가

신인도 심사분야(±10점)에 있어 종전에는 세부심사항목을 우수시공업자로 지정된 자 등 5개항목을 두었으나, 이번 개정시 그밖에 6개항목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대부분 마이너스(-)인 감점항목을 추가하여 신인도 심사를 대폭 강화함.

○ 최근 3년동안 건설업법에서 정한 과태료처분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4)

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2)

○ 기타 건설부장관이 정한 “건설업체의 부실벌점기준”에 해당되는 자(-3)

○ ISO국제품질 인증을 받은 자(+1)

(2) 공사입찰유의서

① 입찰무효사유 내용추가



○ 최근 1년동안 하도급계열화 미흡 또는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처벌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 (-3)

○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과태료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3)

○ 최근 1년동안 당해기관이 실시한 공사입찰, 계약이

총액단가입찰로 집행되는 공사에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을 무효사유에 추가함. 이는 감사원의 건설공사입찰에 대한 감사시 입찰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가 단지 일반관리비나 이윤금액만

다르게 되어있을 뿐 다른 부분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입찰서가 많은 것이 발견되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찰무효사유에 추가한 것임. 따라서 앞으로는 타인의 산출내역서를 복사하거나 거의 그대로 이기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면 당사자의 입찰은 모두 무효사유가 된다는 것에 유념해야 함.

② 계약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의무 삭제

종전에는 국가 등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에 필요한 관계서류 외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93. 12. 31. 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개정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만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토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시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한 것임.

(3) 공사계약일반조건

① 대가지급기한 단축

검사에 합격되어 계약자로부터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준공대가는 종전 20일이내

에서 14일이내로(20일이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기간도 14일이내로)단축되었고, 기성대가 지급기간도 14일이내에서 7일이내를 대폭 축소됨. 이는 계약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개선된 것임.

② 하자보수착공신고서 제출의무 신설

계약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공사이행 소요기간을 명시하고 설계서를 첨부한 하자보수착공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만, 시급을 요하는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에 착공하여야 함. 이는 발주기관이 하자보수요구를 한 경우 계약자가 하자보수공사를 미루는 사례가 있어 하자보수이행절차를 명확히 한 것임.

(4)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 재무상태로 제한할 경우의 세부기준 명시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로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경쟁의 집행상 혼란을 막고자 회계예규에서 그 기준을 명시함. “재무상태”라 함은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부도상태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지 아니한 자들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5)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

① 수의계약 집행기준 개선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종전에는 ㉠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수직적기초를 공통으로 할 때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로서, 전차공사의 규모가 금차공사규모의 25%이상인 때, ㉡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는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25%이상 중복되는 때, ㉢ 마감공사의 경우는 기시공물의 뒷마무리공

사와 성토, 응벽, 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주된 공사 규모의 10%이내인 공사로 세부기준을 명시하고 있던 비율을 삭제함.

이에따라 앞으로는 발주기관이 공사규모, 성질 또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라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임.

② 수의계약체결시 낙찰률 적용 특례규정 신설

계속공사의 수의계약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당해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로만 계약체결토록 되어 있던 것을 당해 수의계약대상공사가 제한적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인 경우에는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상으로 계약체결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

이는 제1차공사가 최저가낙찰제로 집행되어 낙찰률이 85%미만일 때 금번 수의계약 체결할 공사가 제한적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인 경우 무조건 제1차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여 계약체결할 것을 강요할 경우 계약자가 수의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경쟁입찰로 집행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낙찰률은 최소한 85%이상에서 결정되므로 입찰집행에 따른 비능률과 불합리가 초래되는 것을 감안하여 당해 계속공사가 제한적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인 경우에는 적어도 예정가격의 85%이상에서 공사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한 취지임.

(6)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선금 및 대가 등을 지급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금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함.

(7) 선금지급요령

○ 선금지급기한 단축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경우 종전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였으나 이를 14일 이내로 지급토록 개선함.

5.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주요제정내용

재정경제원은 97정부조달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정부조달협정 및 계약관련국제법규를 반영한 정부계약제도를 마련하고자 현행 예산회계법 제6장 "계약편"을 대체하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을 95. 1. 5.자로 공포 95.7.5.부터 시행함.

(1) 낙찰자결정방법변경(제10조 제2항)

○ 현행 100억원이상 공사에는 순수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 대외개방대상공사규모(국가는 500만 SDR로 약 55억원)의 경우에는

-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소위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함.

- 기타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함.

이와관련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할 공사규모는 별도고시할 예정임

○ 적격심사낙찰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으로

- 기본적인 심사기준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업체의 시공 경험,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성실도 및 입찰 가격 등을 기준으로 정하며

- 각 발주관서는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용함.

○ 고시금액미만 공사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방법에 의한 낙찰제가 적용될 것임.

* 참고로 95.4.17. 입법 예고된 동법률시행령과 규칙 제정안의 제정내용을 보면, 현행 제한적최저낙찰제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예정가격누설에 따른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보완하고, 업체에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제한기준인 85%를 상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됨.

(2) 차액보증금제 폐지

현재는 예정가격의 85%미만 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이행의 담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

을 차액보증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제정법률에서는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함에 따라 발주자가 적격업체라고 판단하여 낙찰자로 결정한 이상 계약이행의 담보를 강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폐지하되 필요할 경우 계약보증금에 일원화하기 위하여 차액보증금제도는 폐지함.

(3)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개선(제27조)

○ 현재는 어느 국가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든지 간에 다른 모든 국가기관에서 별도의 제재없이 동일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다른 법령(지방재정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등)에 의하여 제한받은 자도 역시 동일하게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었으나,

○ 제정법률에서는 당해 국가기관은 제재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동내용을 다른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가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함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기관은 제재기관과 다르게 별도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

었음.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전에는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토록 의무화하여 부당한 제재가 되지않도록 하는 절차를 둠.

(4) 기타사항

○ 종전 예산회계법에 규정되어 있던 수의계약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여 일원화시키기 위하여 삭제함.

○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설치(제29조)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재심청구한 경우 이를 심사 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동 위원회를 설치함. ㉞